전주시 공고 제2023-1485호

전주권 광역 폐기물처리(소각)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·공고(2차)

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전주권 광역 폐기물처리(소각)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지선정계획을 결정·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22일

전 주 시 장 

1. 공 고 명 : 전주권 광역 폐기물처리(소각)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·공고(2차)

2. 공고기간 : 2023. 05. 22. ~ 2023. 06. 12. (21일간)

3.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

가. 사 업 명 : 전주권 광역 폐기물처리(소각)시설 건립 사업

나. 위 치 : 전주 광역권(전주시, 김제시, 완주군, 임실군) 내 입지공모 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

다.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

1) 전주시, 김제시, 완주군, 임실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

2) 발생량 : 약 450톤/일 (※ 목표 가동년도 : 2028년 기준)

구 분	대상폐기물(톤/일)						
	종량제봉투	순환형매립장 폐기물	재활용잔재물	음식물협잡물	대형폐기물	소계	합계
전주시	232.45	73	32.54	20.97	35.14	394.10	449.70
김제시	22.70	-	-	-	-	22.70	
완주군	29.25	-	-	-	-	29.25	
임실군	3.65	-	-	-	-	3.65	
소계	288.05	73	32.54	20.97	35.14	449.7	

라. 폐기물처리 대상지역* : 전주시, 김제시, 완주군, 임실군 (* 최적화 권역)

마.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예상 규모

1) 입지선정계획 대상 시설 종류 : 생활폐기물 처리(소각)시설

2) 예상규모 : 소각시설 550톤/일 (※ 가동일수 : 300일 기준)

3) 부지면적 : 67,500㎡ 이상

※ 상기 사항은 향후 세부계획 수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4. 입지선정 기준 및 방법

가. 입지선정 기준

1)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지역

2) 주거지와 격리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

3) 차량 진·출입이 용이하고 교통 혼잡이 적은 지역

4)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

- 상수원보호구역, 자연환경보전지역, 문화재보호구역, 공원지역, 「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상행위 제한지역,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

5) 토지 매입과 협의 보상이 용이한 지역

6) 기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

나. 입지선정위원회 구성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[별표1의2]에 따라 구성

다. 입지선정 방법

1)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또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

2)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·고시 (1개월이상)

5.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

가. 기　간 : 2023. 05. 22. ~ 2023. 06. 12. (21일간)

나. 범　위 : 전주 광역권(전주시, 김제시, 완주군, 임실군) 전역

다. 후보지 조건

1) 공고문 제4항의 입지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

2) 67,500㎡ 이상의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

3) 소각시설 550톤/일 이상 설치에 따른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

라. 응모자격

1) 공모일 기준,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**300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80% 이상 찬성 동의서**를 얻은 법인, 단체, 마을 공동체 대표 등

다만, **자연부락 또는 공동주택**의 **일부 세대**가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포함될 때에는 해당 자연부락 또는 공동주택의 **전체 세대주를 동의 대상에 포함**함.

2) 신청지의 토지가 **사유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80% 이상 매각 동의서**를 얻은 지역

※ 신청부지 및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없거나, 신청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음.

마. 응모방법

1) 접수기간 : 2023. 05. 22. ~ 06. 12. (공고 기간 내)

※ 접수기한 : 2023. 06. 12.(월) 18:00까지 방문 접수에 한함.

2) 접수방법 :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

3) 접 수 처 : 전주시청 자원순환과 소각시설팀(기린대로 213, 대우빌딩 4층)

※ 접수된 서류는 입지후보지 및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포함되는 관할 시·군에 공유됨.

바. 구비서류

1) 입지 후보지 신청서 1부
2) 위원회 명단 1부
3) 회의록(주민 총회 의결사항 포함) 1부
4) 신청지 토지명세서 및 간략 위치도 1부
5) 주민동의서(세대주별 작성) 1부
6) 토지매각동의서(소유주별 작성) 1부
7) 개인정보수집동의서(세대주 및 소유주별 작성) 1부

사. 유의사항

1)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2) 공고 내용 중 이견이 있는 경우 전주시 해석에 따름.
3) 주민동의 등 허위사실 기재, 구비서류 누락 및 착오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(유치위원회)의 책임으로 함.

6. 입지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

가. 지원근거 :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
나. 지원규모 및 시기

구 분	내 용	규 모	시 기
주민 편익시설	○ 주민편익시설 설치	시설사업비의 20% 내	○ 지원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협의·결정 ○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 확정 이후 결정
주민 지원기금	○ 주민지원기금 조성	반입수수료의 20% 내	○ 폐기물 반입기간

1) 위 주민지원기금은 법령에 따라 주변영향지역(직·간접영향권) 내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됨.
2)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 결성 후 논의하여 최종 결정

7. 기타사항

가. 간접영향권의 범위 등 기타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, 그 외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나. 본 공고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행정상의 판단 등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, 취소 또는 변경은 본 공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지하기로 한다.

다. 기타 문의 사항은 전주시청 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(☎281-2841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전주권 광역 폐기물처리(소각)시설 입지 후보지 신청서 1부.
2. 위원회 명단 1부.
3. 회의록(주민 총회 의결사항 포함) 1부.
4. 신청지 토지명세서 및 간략 위치도 1부.
5. 주민 동의서(세대주별 작성) 1부.
6. 토지 매각 동의서(소유주별 작성) 1부.
7.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(세대주 및 소유주별 작성) 1부. 끝.